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4. 11. 20 선고 2024가단146391 판결 [점유회수의 소]

전 문

원고1. 주식회사 A

2. B

3. C

4. D

5. E

6. F

7. G

8. H

9. I

10. J

11. K

12. L

13. 주식회사 M

14. N

15. O 주식회사

16. P

17. Q 주식회사

18. R

19. S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트윈

담당변호사 강석원

피고1. 주식회사 T

2. U

변론 종결2024. 10. 30.

판결 선고2024. 11. 20.

주 문

1.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강우찬

별지